

<p>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-bottom: 10px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391</td></tr> <tr>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</tr> </table> <p>발의년월일 : 1999년 9월 7일 발의자 : 신경식의원 외 13인</p> <p>1. 제안이유 화재진압 및 급수지원 등에 사용되는 소화전에 부과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행정에 소극적 자세를 초래할 수 있고 수도사용의 직접 수혜자인 시민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으므로 수도요금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.</p> <p>2. 주요골자 가.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함.(안 제2조) ○ 현행 : 1톤 미만(1회 또는 연속되는 행위에 의한 경우는 1주일)</p> <p>○ 개정 : 5톤 미만(공사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총량 기준)</p> <p>나.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, 법령에서 그 근거규정이 삭제된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의 법령상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·장비 이외에 시조례로 추가로 중간집하장·굴삭기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함.(안 제13조)</p> <p>다.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무적지도·감독 제도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.(안 제15조)</p> <p>라.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억제하도록 함.(안 제22조)</p> <p>3. 관계법령</p> <p>○ 폐기물 관리법 제25조(사업장 폐기물의 처리)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(폐기물처리업) 제3항·제6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(폐기물처리업) 제3항·제6항</p> <p>○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10조(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) 제1·2항</p> <p>4. 검토의견 (총괄부문) ○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법령이 지난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 (세부사항)</p>	의안	391	번호		<p>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('99.8.9)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.</p> <p>2. 주요골자</p> <p>가. 가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함.(안 제2조)</p> <p>○ 현행 : 1톤 미만(1회 또는 연속되는 행위에 의한 경우는 1주일)</p> <p>○ 개정 : 5톤 미만(공사의 착공부터 완료시까지 총량 기준)</p> <p>나.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, 법령에서 그 근거규정이 삭제된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서의 법령상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·장비 이외에 시조례로 추가로 중간집하장·굴삭기 등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함.(안 제13조)</p> <p>다.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무적지도·감독 제도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.(안 제15조)</p> <p>라.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를 억제하도록 함.(안 제22조)</p> <p>3. 관계법령</p> <p>○ 폐기물 관리법 제25조(사업장 폐기물의 처리) 제1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(폐기물처리업) 제3항·제6항 폐기물 관리법 제26조(폐기물처리업) 제3항·제6항</p> <p>○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10조(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) 제1·2항</p> <p>4. 검토의견 (총괄부문) ○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법령이 지난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,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 (세부사항)</p>
의안	391				
번호					
<p>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화전과 급수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1999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9년 10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</p> <p>1. 제안이유</p>	<p>931</p>				